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우(46587)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11-3번지(2층) / 전화(051)338-4745 / 전송(051)363-4745

문서번호 : 구포3구역 외제 2018-72호

시행일자 : 2018. 06. 04(월)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업무담당관

제 목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포3구역 신구포 반도유보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입주자모집공고 2018년 06월 29일(예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20번지 일원에 총790세대 규모의 신구포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신구포 반도유보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을 확인 바라며, 기관추천 명단을 2018년 06월 25일(월) 아래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신청일(2018.07.03.(화) 17:30까지)에 아파트투유(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잔여물량이 타 유형 특별공급세대로 전환됨을 알립니다.
5.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타 유형 특별공급세대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잘 홍보해 주시어 공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당 건설지역 우선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 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근무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8-1번지 신구포 반도유보라 모델하우스

나.담당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8-1번지 신구포 반도유보라 모델하우스 이광재 실장

다.연락처 : 1800-0355 / FAX.(051) 336-9797

라.이메일 : kj1670@hanmail.net

붙임: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신구포 반도유보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신구포 반도유보라 특별공급 접수대장 1부. 끝.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 열



수신처 :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시장애인복지과, 국군복지단, 보건복지부, 하나원, 여성가족부, 연금공단주택사업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체육회,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부산중소기업청, 북구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신구포 반도유보라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개요 및 일정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20번지 일원

○공급규모 : 총 790세대 중 일반분양 471세대(특별공급 194세대 포함 / 조합원 263세대, 보류지 12세대, 임대 44세대 제외) 특별공급 194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5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4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사 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8.06.28.(목)예정	http://gupo-ubora.co.kr
모델하우스 개관	2018.06.29.(금)10:00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8-1 신구포 반도유보라 모델하우스
신청일자	2018.07.03.(화) 08:00~17:30까지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며,(다만,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당첨자 발표	1단지 : 2018.07.11.(수) 2단지 : 2018.07.12.(목)	APT2you 홈페이지, 당사견본주택, 홈페이지 게재

※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배정내역 : 194(예비대상자:104)세대

구 분		48.7388	59.9466A	59.7277B	74.9026	84.9606A	84.8514B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1)	1(1)	1(1)	1(1)	1(1)	1(1)	6(6)
	장애인	1(1)	1(1)	1(1)	1(1)	1(1)	1(1)	6(6)
	장기복무제대군인		1(1)		1(1)	1(1)	1(1)	4(4)
	10년이상복무군인		1(1)		1(1)	1(1)	1(1)	4(4)
	의상자,의사자유족		1(1)		1(1)	1(1)	1(1)	4(4)
	북한이탈주민		1(1)		1(1)	1(1)	1(1)	4(4)
	위안부피해자		1(1)		1(1)	1(1)	1(1)	4(4)
	귀국공무원 등		1(1)		1(1)	1(1)	1(1)	4(4)
	과학기술전문가				1(1)		1(1)	2(2)
	우수선수				1(1)		1(1)	2(2)
	우수기능인				1(1)		1(1)	2(2)
	중소기업근로자				1(1)		1(1)	2(2)
	국외취업근로자						1(1)	1(1)
다자녀 특별공급	2(1)	8(3)	2(1)	12(4)	8(3)	13(6)	45(18)	
신혼부부 특별공급	5(2)	16(6)	5(2)	25(10)	17(6)	26(11)	94(37)	
노부모 특별공급	0	2(1)	0	3(1)	2(1)	3(1)	10(4)	
합계	9(5)	34(18)	9(5)	52(27)	35(18)	55(31)	194(104)	

※ 기관추천 접수세대가 미달일 경우, 타 유형 특공세대로 전환되며 잔여세대 배정 후 무작위 추첨진행

※ (): 예비대상자

▶ 특별공급 자격사항

- 입주자모집 공고(2018.06.28. 예정)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 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비속

중복 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기관추천 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 일에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자격이 주어짐.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신청접수는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며(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마감시간(17:30)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타 유형 특별공급으로 배정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8.07.03.(화) 08:00~17:30까지)에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건본주택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잔여물량은 타 유형 특별공급 세대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8.06.28.(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홍보물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06.28.(목)(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홈페이지 <http://gupo-ubora.co.kr> 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여 건본주택에서 신청하는 청약자의 경우)

- 아래의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06.28.(금)(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아래 필요 신청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구성원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특별공급 신청시

해 당 서 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신청일에 신청장소(건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별공급 신청용 1통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날인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구 비 서 류	비 고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증명서 2통(특별공급 신청 위임용 1통포함)
신청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날인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APT2you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하신 경우, 위의 서류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신구포 반도유보라 (특별공급 접수대장)

■ 추천기관 :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시장장애인복지과, 국군복지단, 보건복지부, 하나원, 여성가족부, 연금공단주택사업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체육회,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부산중소기업청, 북구고용센터등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신구포 반도유보라(※기관 우선순위 기준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기관	우선순위	우선순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1순위	1				
		2				
	예비	1				
		2				

※ 추천기관은 예비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신청일(2018.07.03.(화)08:00~17:30까지)에 APT2you 홈페이지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신청가능 10:00~14:00까지), 잔여물량이 타 유형 특별공급세대로 전환됨을 알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